



제 420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 김상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56호)
-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95호)

2025.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7
1. 세계청년대회 개요	7
2.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요	10
3. 제정안의 필요성	13
4. 제정안의 구성체계	17
5. 조문별 검토	19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19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4조)	23
다. 조직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5조~제7조)	25
라. 대테러·안전대책 등(안 제8조)	29
마. 부담금 감면 및 채권 매입의무 면제 등(안 제9조~제14조)	31
바. 자료의 제공요청(안 제15조)	34
사. 잔여재산의 귀속(안 제16조)	35
아. 자원봉사자(안 제17조)	36

자. 정부지원위원회(안 제18조)	37
차.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안 제19조~제22조) ...	41
카. 세계청년대회 회장 사용 등(안 제23조~제25조)	44
타. 후속사업(안 제26조)	46
파. 부칙(안 제1조~제3조)	48

※ 참고자료

1.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개요	51
2. 국내 유사 입법례	53
3. 세계청년대회 지원법 해외사례	62
4. 천주교 현황	63

I. 제안경위

1) 김상훈·김병기 의원안

가. 발 의 자 : 김상훈·김병기의원 등 59인

나. 발 의 일 : 2024. 11. 7.

다. 회 부 일 : 2024. 11. 8.

2) 성일종 의원안

가. 발 의 자 : 성일종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11. 19.

다. 회 부 일 : 2024. 1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상훈·김병기 의원안

제안이유

2027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천주교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써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

이에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을 통해 청년발전과 청년지원 및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활동 활성화, 그리고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제4조제1항).
- 나.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를 운영함(제5조제1항).
- 다.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제6조제1항).
- 라.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마.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과 종사자·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바.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법률에서 정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사.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사업 등의 수익사업과 기념주화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제12조).

아.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자.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국무위원 등을 위원으로 함(제18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 청년들에게 청년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한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카. 법무부장관은 세계청년대회를 위하여 사증발급 또는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 출입국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함(제21조).

타. 보건복지부장관은 세계청년대회 참가자의 보건안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함(제22조).

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2) 성일종 의원안

제안이유

전 세계 청년들의 순례와 친교를 위한 세계청년대회는 1986년 3월 23일 로마에서 제1차 세계청년대회가 개최된 이래 2 ~ 3년 마다 대륙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음.

2027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천주교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

이에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을 통해 청년발전과 청년지원 및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활동 활성화, 그리고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를 운영함(안 제5조제1항).

다.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라.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과 종사자·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법률에서 정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사업 등의 수익사업과 기념주화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국무위원 등을 위원으로 함(안 제18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 청년들에게 청년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한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카. 법무부장관은 세계청년대회를 위하여 사증발급 또는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 출입국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함(안 제21조).

타. 보건복지부장관은 세계청년대회 참가자의 보건안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함(안 제22조).

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세계청년대회 이후 국제순례지에서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활동 활성화 및 국제친선 활동을 위하여 제2조제2호 직접관련시설 중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6조).

Ⅲ. 검토의견

1.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 개요

-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 교회가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전 세계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교류하는 대규모 축제임.
- UN은 1979년 12월 오늘의 젊은이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과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및 여망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1985년을 국제청소년의 해(International Youth Year)로 정하였음.
- 이에 발맞추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젊은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1985년에 세계 젊은이의 날을 선포함.
- 1986년 3월 2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1차 세계청년대회가 개최된 이래, 해마다 각 지역의 교구에서 대회를 주최하고 있으며,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행사 성격의 세계청년대회는 3~4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음.
- 대회 참석자 수를 보면, 1995년 필리핀 마닐라 대회에는 약 400만 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고, 2008년 호주 시드니 대회에는 약 40만명으로 가장 적은 인원이 참석하였음.
- 가장 최근 대회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2023년 8월에 개최되었으며 약 150만명이 참석하였음.

[역대 세계청년대회 개최 현황]

연도	개최일자	국가	장소	참석자 수
1985년	3월 23일	이탈리아	로마	300,000명
1987년	4월 11~1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1,000,000명
1989년	8월 15~20일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400,000명
1991년	8월 10~15일	폴란드	체스토호바	1,600,000명
1993년	8월 10~15일	미국	덴버	500,000명
1995년	1월 10~15일	필리핀	마닐라	4,000,000명
1997년	8월 19~24일	프랑스	파리	1,200,000명
2000년	8월 15~20일	이탈리아	로마	2,000,000명
2002년	7월 23~28일	캐나다	토론토	800,000명
2005년	8월 16~21일	독일	쾰른	1,200,000명
2008년	7월 15~20일	호주	시드니	400,000명
2011년	8월 16~21일	스페인	마드리드	2,000,000명
2013년	7월 23~28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3,700,000명
2016년	7월 26~31일	폴란드	크라쿠프	3,500,000명
2019년	1월 22~27일	파나마	파나마시티	700,000명
2023년	8월 1~6일	포르투갈	리스본	1,500,000명

※ 자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는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는 생산유발효과 약 1조 1,961억원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6,061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고, 2013 리오 세계청년대회와 2011 마드리드 세계청년대회는 각각 약 1조 450억원과 약 2,309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함.

[역대 세계청년대회 경제적 파급효과(추정)]

- (2023 리스본 WYD) 생산유발효과 8억 1,100만 유로(약 1조 1,96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억 1,100만 유로(약 6,061억원) 예측 (PwC Portugal, 2023)
- (2013 리오 WYD) 총 경제적 효과 약 19억 헤알(약 1조 450억원) 추정
 - 행사 참가자들이 숙박, 음식, 교통 및 기타 지출을 통해 지출한 직접적인 재정 기여는 약 9억 2,000만 헤알(약 5,060억원) / 간접적 영향은 약 9억 8천만 헤알(약 5,390억원)
- (2011 마드리드 WYD) 마드리드 지역 1억 4,800만 유로(2,309억원)의 경제적 효과 창출
 - 고용유발효과 약 1만명(직접 고용 약 3,000명, 간접 고용 약 7,000명)

※ 환율: 각 대회 개최년도 7월 평균환율

2.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요

- 2023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세계청년대회 폐막 미사에서 차기 개최지로 서울이 발표되면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가 확정되었음.
- 대회 기간(안)은 2027년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이고, 대회 프로그램(안)을 보면 7월 28일부터 8월 2일(4박 5일)까지 인천, 의정부 등 14개 지역교구¹⁾에서 각각 교구대회를 개최한 후, 8월 3일부터 8월 8일(5박 6일)까지 본대회(서울)에서 교황 환영행사, 개막미사, 교리교육, 십자가의 길, 젊은이 축제, 밤샘기도, 폐막미사 등의 행사가 개최될 예정임.

[대회프로그램(안)]

7/28	29	30	31	8/1	2	3	4	5	6	7	8
도착	교구대회			출발	이동		교리교육 성삼일			YF	폐막 미사
							젊은이 축제(YF)				봉사자 만남
						개막 미사	YF	환영 행사	십자가 의길	밤샘 기도	

1) 14개 교구 : 인천, 의정부, 수원, 춘천, 원주, 대전, 청주, 대구, 안동, 부산, 마산, 전주, 광주, 제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동 대회 준비를 위해 2023년 12월에 조직위원회를 출범하였고, 다음해인 2024년 7월에 대회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2024년 8월 7일에 재단법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 중임(서울시 등록).

[(재)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현황]

- (목적)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를 통해 젊은이들이 교회와 사회 안에서 진정한 자신의 역할을 갖고, 타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연대하는 기회 제공
- (임원) 이사장 이경상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이사 12인, 감사 2인
- (재산) 47억원 *(기본재산 30억원, 보통재산 17억원)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출연금, 서울시 등록일 기준
- (사업내용) 2027 세계청년대회 사업,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등

※ 자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에 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 예산 7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2025년도 예산액 7억원 중 4억원은 대회 홈페이지 개발 및 홍보관 기획 설치 등 통합 홍보 사업에 편성되었고, 3억원은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에 편성되었음²⁾.

2) 사업명: 종교문화활동 지원(1131-300)

[2025년도 예산 편성 내역]

□ 사업내용

- (통합홍보)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홍보관 설치, 홍보영상 제작
-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개발, 운영) 종교적 의미를 넘은 청년 축제 프로그램 개발
 - 공연, 미술전시, 연극 등 다양한 사전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운영

□ 2025년 예산 : 700백만원(국비) ※자부담:700백만원 별도

- 통합 홍보(400백만원)
 - 홈페이지 개발(5개국어) 및 운영(150백만원)
 - 홍보관 기획 설치 및 홍보 영상 제작 등(250백만원)
-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00백만원)

※ 자료:문화체육관광부

- 한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프로그램 및 운영체계 등 계획 수립, 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민간 참여(후원 등) 확대 방안 마련, 경제적 효과성 추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임(~'25.4.).

3. 제정안의 필요성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국내외 최소 40만명 이상 최대 100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예상되고 미래 세대인 10·20대를 중심으로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가하여 타문화 소통을 통해 글로벌 협력과 연대감 형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가톨릭 종교 행사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행사로서 민관의 다각적 협력과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제정안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세계청년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와 정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 심의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위원회의 기부금품 모집 및 수익사업 등을 통해 대회 경비 마련 근거를 신설하며, 대회 참가자에 대한 출입국 협조 및 보건안전 지원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청년의 국제적 교류 및 체험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활동을 활성화하며,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 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종교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 대회 개최·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불교계측의 특별법 제정 반대의견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회의 취지, 일정, 규모, 운영 방식 및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먼저,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면 첫째, 2023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세계청년대회에 150만명의 인원이 참석하는 등 최근 평균 100만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발전하였고, 이번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에는 최소 40만명, 최대 100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추산되므로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대응, 응급의료 지원, 출입국, 전국적 이동 대책 마련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임.
 - 해외 청년들이 동 대회의 주요 참석자이고 대회 개최 기간이 7월 말부터 8월 초로 한여름 무더위, 태풍 또는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2023년 8월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대회 준비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둘째, 서울 및 14개 지역에서 2주간 진행되는 동 대회에 참가하는 해외 청년들에게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와 관광자원 등을 홍보하

고,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임.

- 생산유발효과 2조 3,375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7,680억원, 고용 유발효과 7,923명 전망(KDI 보고서, 2024.7.)

○ 셋째, 이번 대회는 민간행사로서 기존의 국가 등에서 개최한 국제 행사와 성격이 다르기는 하나, 대규모 국제행사를 국내에서 개최 하는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한 사례가 다수 있음.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2008. 3. 14. 제정), 「포항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2009. 10. 9. 제정), 「2018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012. 8. 22. 제정),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2012. 12. 18. 제정),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2018. 12. 18. 제정),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2021. 8. 17. 제정) 등

○ 넷째, 세계청년대회 지원 관련 해외 입법사례를 보면 세계청년대회가 대회 주최국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효과를 고려하여 여러 국가에서 법률을 제정하여 지원한 사례가 있음(자료: 참고3).

- 「2013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세계청년대회 지원법」, 「2016 폴란드 크라쿠프 세계청년대회 특별 조치법」, 「2023 포르투갈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지원법」 등

- 세제혜택 등 재정지원, 조직위원회 설립, 안전·공공질서·의료 보장, 교통 지원 등을 포함
- 다음,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면, 불교계측은 동 제정안은 일반적인 세계 청년 행사가 아니라 가톨릭이라는 특정 종교의 행사를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헌법 제20조제2항³⁾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임⁴⁾.
- 구체적으로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이 조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안 제5조), 조직위원회가 국가 등에게 필요한 지원 및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안 제6조제1항), 조직위원회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가 아닌 유사법인에 귀속하도록 하고(안 제16조), 세계 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안 제18조), 국제순례지관련시설 사업을 지원하는(안 제6조제2항 및 제26조) 조항의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임.

3)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4) 불교계측은 “헌법정신 위배하는 천주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저지 대책위원회” 상임 위원장 명의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철회 요청의 건”의 공문을 법안 발의 의원에게 발송하였음(2024.12.27.).

4. 제정안의 구성체계

- 김상훈·김병기의원안은 본칙 25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일종의원안은 본칙 26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두 제정안 모두 목적·정의·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의 총칙 사항과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적인 제정법의 입법체계를 따른 것임.

	제정안(김상훈·김병기의원안)	제정안(성일종의원안)
제1조	(목적)	(목적)
제2조	(정의)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조직위원회의 운영)	(조직위원회의 운영)
제6조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등의 지원)
제7조	(기부금품의 접수)	(기부금품의 접수)
제8조	(대테러·안전 대책 등)	(대테러·안전 대책 등)
제9조	(부담금 등의 감면)	(부담금 등의 감면)
제10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제11조	(수익사업)	(수익사업)
제12조	(기념주화의 판매)	(기념주화의 판매)
제13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기념우표 등의 발행)
제14조	(수수료 등)	(수수료 등)
제15조	(자료의 제공요청)	(자료의 제공요청)

제16조	(잔여재산의 귀속)	(잔여재산의 귀속)
제17조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제18조	(정부지원위원회)	(정부지원위원회)
제19조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2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21조	(출입국관리의 협조)	(출입국관리의 협조)
제22조	(보건안전의 협조)	(보건안전의 협조)
제23조	(세계청년대회 회장 등의 사용)	(세계청년대회 회장 등의 사용)
제24조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25조	(청년단체 활동 지원)	(청년단체 활동 지원)
제26조	-	(후속사업)
부 칙	(시행일, 유효기간, 경과조치)	(시행일, 유효기간, 경과조치)

5.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 제정안은 법 제정 목적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직접관련시설·여건조성시설·국제순례지관련시설의 뜻을 정의하고 있음.

제정안(김상훈·김병기의원안)	제정안(성일종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2027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좌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좌동)
1.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이란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이하 “세계청년대회”라 한다)에 관한 직접관련시설 및 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1. (좌동)
2. “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좌동)
가. 세계청년대회 운영·관	

제정안(김상훈·김병기의원안)	제정안(성일종의원안)
리 시설 나. 대회장과 대회장 관련 편의시설 다. 체험장과 체험장 관련 편의시설 라. 전시관 마. 대회장 및 체험장, 전시관 등 진입도로 바. 응급의료시설 사. 전기·전자·통신·가스 시설 아. 그 밖에 세계청년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세계청년대회 운영 및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정비가 필요한 교통시설 나. 직접관련시설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및 홍보안내시설 다. 그 밖에 세계청년대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좌동)

제정안(김상훈·김병기의원안)	제정안(성일종의원안)
	4. “국제순례지관련시설”이란 교황청이 공식 승인하고 선 포한 순례길과 국제성지(이하 “국제순례지”라 한다)와 관련 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을 말한다.

- 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을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여, 입법의 취지와 입법 목적의 핵심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는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관련 용어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고 정책대상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및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는 성일종의원안 제2조제4호의 ‘국제순례지관련시설’은 동 대회 개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의견임.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4조)

- 제정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세계청년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김상훈·김병기의원안, 성일중의원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청년기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청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청년대회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 제3조는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 설치·이용 등에 관하여 동 법률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청년기본법」⁵⁾의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법적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5) 「청년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2.4. 제정, 2020.8.5. 시행)

- 안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동 대회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회에 대규모 인원의 참가가 예상되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제정안에 규정한 것으로 보임.

다. 조직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5조~제7조)

- 제정안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의 구성,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김상훈·김병기의원안)	제정안(김상훈·성일종의원안)
제5조(조직위원회의 운영) ① 서울대교구 교구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조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청년대회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의 설치·관리 4. 세계청년대회 참가국 및 국	제5조(조직위원회의 운영) (좌동)

제정안(김상훈·김병기의원안)	제정안(김상훈·성일종의원안)
내외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세계청년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 세계청년대회의 준비·운영,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국가 등의 지원) ① (좌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 세계청년대회의 준비·운영,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u>다만, 국제순례지관련</u>

제정안(김상훈·김병기의원안)	제정안(김상훈·성일종의원안)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국비 보조율에 준하여 지원한다.</u>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 (좌동)

- 안 제5조는 세계청년대회의 준비 및 개최를 위해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를 운영하고, 조직위원회가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계획 수립 및 설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회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조직위원회를 운영하여 대회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개최·운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 한편, 안 제5조제1항은 ‘서울대교구 교구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를 운영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안 부칙 제3조는 ‘2024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재단법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⁶⁾를 제5조에 따른 조직위원회로 본다.’라고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제정안(김상훈·김병기의원안, 성일종의원안)
부칙 제3조(경과조치) 2024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재단법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를 제5조에 따른 조직위원회로 본다.

- 안 제6조는 안 제5조에 따른 조직위원회가 국가 등에 행정적·재정적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회 준비와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 등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아 규정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성일종의원안 제6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순례지관련시설 지원에 관한 별도규정을 두는 것은 특정지역을 위한 특혜성 시비의 우려가 있고, 동 대회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고, **기획재정부**는 단서조항은 국비 보존을 우대조항으로 특정 종교·지역만 해당되므

6) -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 (재)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이사장: 이경상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로 종교·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는 동 대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의견임.

- 안 제7조는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조직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라. 대테러·안전 대책 등(안 제8조)

- 제정안은 세계청년대회 시설과 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테러·안전 대책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김상훈·김병기의원안, 성일종의원안)
제8조(대테러·안전 대책 등)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 관련 시설과 종사자·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안전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안 제8조는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과 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 국가에서 대테러·안전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규모의 시설이 운영되고 많은 인력이 참석하는 동 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이해됨.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⁷⁾, 「2018 평창

7)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8조(대테러·안전 대책 등)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과 종사자·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안전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테러·안전 대책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⁸⁾ 및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⁹⁾ 등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바 있음.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 구체적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대테러·안전 대책기구의 설치·운영 사항에 관한 규정도 필요하므로 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대테러·안전대책)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과 선수·임원·보도진·종사자·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책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제18조(대테러·안전 대책 등)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물포럼 관련 시설과 세계물포럼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테러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테러대책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부담금 감면 및 채권 매입의무 면제 등(안 제9조~제14조)

- 제정안은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천 점용료·사용료 부담금 등 감면, 채권 등의 매입 의무 면제, 조직위원회의 휘장사업 및 기념품 판매 등의 수익사업 허용, 기념주화 판매, 기념우표 등의 발행 및 수수료·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김상훈·김병기의원안, 성일종의원안)

제9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사용료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
4.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5. 그 밖에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이 필요한 부담금

제10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제11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휘장사업
2. 기념주화 등 기념품의 판매

제정안(김상훈·김병기의원안, 성일종의원안)

3. 그 밖에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기념주화의 판매)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13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세계청년대회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조직위원회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안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회 지원에 필요한 경우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도로 점용료 등의 부담금을 감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는 조직위원회가 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 시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며, 안 제11조는 조직위원회가 대회 준비·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휘장사업, 기념주화 등 기념품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기념주화 발행, 기념우표 및 우편엽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4조는 조직위원회가 대회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대회와 관련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세계 청년대회 관련시설이나 물품, 용역 등에 대한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조직위원회가 대회 준비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 개최·운영을 위한 홍보 및 경상경비 등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바. 자료의 제공요청(안 제15조)

- 제정안은 조직위원회가 행정기관 등에 세계청년대회와 관련한 보고서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김상훈·김병기의원안, 성일종의원안)
제15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안 제15조는 조직위원회가 세계청년대회와 관련한 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받아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직위원회가 대회 관련 자료 검토·연구를 통해 대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고하여 세계청년대회 운영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사. 잔여재산의 귀속(안 제16조)

- 제정안은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김상훈·김병기의원안, 성일종의원안)
제16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조직위원회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다만, 정관으로 잔여재산의 귀속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 안 제16조는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조직위원회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되, 정관에서 그 귀속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¹⁰⁾ 따라 해당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려는 것으로, 대회가 끝난 이후 조직위원회의 해산이 예상되므로 법률에 조직위원회 잔여재산의 처리 방법에 대해 규정한 것임.

10)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무상대부)한다.

아. 자원봉사자(안 제17조)

- 제정안은 세계청년대회 자원봉사자의 모집, 자원봉사자의 신분·안전 계획 마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김상훈·김병기의원안, 성일종의원안)
제17조(자원봉사자)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자원봉사자의 신분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안 제17조는 세계청년대회 운영 등을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자원봉사자의 신분 및 안전 보장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해당 계획 마련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세계청년대회가 대규모 행사인 점을 고려하면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므로 제정안과 같이 자원봉사자 모집 근거를 규정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함께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됨.

자. 정부지원위원회(안 제18조)

- 제정안은 세계청년대회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정부지원위원회를 두고, 정부지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김상훈·김병기의원안, 성일종의원안)

제18조(정부지원위원회) ①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주요 지원 대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법무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여성가족부장관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8. 보건복지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국토교통부장관
11. 해양수산부장관

제정안(김상훈·김병기의원안, 성일종의원안)

12. 국무조정실장
 13. 서울특별시장
 14. 경찰청장
 15. 소방청장
 16. 조직위원회 위원장(이하 “조직위원장”이라 한다)
 17. 세계청년대회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1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8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세계 청년대회와 관련된 주요 지원 대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및 위임 사항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세계청년대회 준비 및 개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세계청년대회의 차질없는 준비와 완성도 높은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여러 부

처11)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아 규정된 것임으로 보임.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바 있음12).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타 국제행사와 달리 정부 조직이 아닌 민간(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조직위원회가 대회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출입국, 안전, 교통, 응급의료 지원 및 보건 등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정부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무지원단(행정지원체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11) 의전(외교부), 출입국·비자(법무부), 안전(행정안전부, 국정원), 문화행사·홍보(문화체육관광부), 의료(보건복지부), 교통(경찰청), 비상응급체계(소방청) 등

12)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박람회와 관련된 시설 사후활용 및 수익사업 등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①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각 호 생략>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행정안전부는 실무지원단 설치는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¹³⁾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직제(대통령령)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무지원단 설치 여부를 개별 법률에 두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임.

○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9개 부처¹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포함되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직제 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고, 그 명칭을 “○○직제”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의2의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2.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3. 삭제
4. 직위에 부여되는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위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
5.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 5의2. 직제시행규칙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
6. 기타 행정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4) 기재부, 교육부, 국토부, 행안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문체부, 중기부, 금융위

차.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안 제19조~제22조)

- 제정안은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의 신축·개축·보수 경비 지원, 조직위원회의 차량 유상 재임대 및 운전자 알선 근거 마련, 세계청년대회 참석자의 출입국관리 협조 및 보건안전 협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김상훈·김병기의원안, 성일종의원안)

제19조(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 청년들에게 청년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한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청년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조직위원회는 원활한 대회 접근과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계청년대회 종료일까지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받은 사업용 자동차를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조직위원회가 대회 관계자에게 발급하는 등록카드를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유상으로 다시 대여하거나 해당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할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제21조(출입국관리의 협조) 법무부장관은 세계청년대회를 위하여 사증발급 또는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 출입국 과정

제정안(김상훈·김병기의원안, 성일종의원안)

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보건안전의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세계청년대회 참가자의 보건안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안 제19조는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을 신축, 개축 또는 보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청년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 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세계청년대회 개최·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안 제20조는 조직위원회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15)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받은 자동차를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바.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게 유상으로 재대여하거나 해당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할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대규모 인원이 서울 및 14개 지역교구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회 참가자에게 원활한 수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임.

- 안 제21조와 제22조는 정부가 세계청년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 등의 출입국 관리 협조를 지원하고 대회 참가자의 보건안전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세계 각지에서 청년들이 참가하고 대회 개최 시기가 한여름인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의 출입국 지원 및 보건복지부의 보건안전 지원은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아 규정한 내용으로 보임.

3천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2.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1호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할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세계청년대회 휘장 사용 등(안 제23조~제25조)

- 제정안은 세계청년대회 휘장 등의 사용 승인 허가, 행정사무의 위임 절차 및 청년단체 활동 육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김상훈·김병기의원안, 성일종의원안)

제23조(세계청년대회 휘장 등의 사용) ①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세계청년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벌칙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정안(김상훈·김병기의원안, 성일종의원안)

제25조(청년단체 활동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세계청년대회 종합계획에 따라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청년단체 활동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23조는 세계청년대회 휘장 또는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상표법」 등의 벌칙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회 휘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대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우려를 막을 필요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보임.
- 안 제2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권한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대회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보임.
- 안 제25조는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인적자원 양성 및 청년대회 활동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동 대회를 통해 전세계의 청년들 간 인적·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행사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 등이 인력양성 및 청년단체 활성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이해됨.

타. 후속사업(안 제26조)

- 성일종의원안은 세계청년대회 이후 후속사업으로 국제순례지에서 세계청년대회에 관한 편의시설, 전시관 등의 시설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김상훈·김병기의원안)	제정안(성일종의원안)
(해당사항 없음)	제26조(후속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u>세계청년대회 이후 국제순례지에서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활동 활성화 및 국제친선 활동을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u>

- 성일종의원안 제26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세계청년대회가 끝난 이후 국민의 종교문화, 여가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국제순례지에 세계청년대회 관련 편의시설, 전시관, 대회장 및 체험관 등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회 개최 이후에도 관련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법안이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법임에도 대회 개최와 관련이 없는

국제순례지관련시설에 대해 대회 이후에도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임.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는 국제순례지관련시설은 세계청년대회 개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의견임.

파. 부칙(안 제1조~제3조)

- 제정안 부칙은 제정안의 시행일, 유효기간 및 경과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김상훈·김병기의원안)	제정안(성일중의원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제18조, 제19조, 제24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좌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조직위원회가 해산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조직위원회가 해산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u>다만, 제26조는 203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u>
제3조(경과조치) 2024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재단법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를 제5조에 따른 조직위원회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좌동)

- 부칙안 제1조는 제정안의 시행일을 규정한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일부 조항의 경우 시행 준비 등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임.
- 부칙안 제2조는 제정안의 유효기간을 조직위원회가 해산할 때까지로 정하면서, 성일종의원안은 단서 조항으로 제26조는 2037년까지로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
 - 다만, 유사 입법례를 보면 조직위원회 등의 해산일이 아닌 특정 시점을 정하여 법률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을 제정안 심사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⁶⁾.
 -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에서 제26조에 따른 국가순례지 관련 후속사업만 2037년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는 부칙안 제2조의 단서조항에 대하여 타종교로부터 과다지원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임.

16)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안 제3조는 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로 2024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재단법인인 ‘2027 서울 청년대회 조직위원회’를 제5조에 따른 조직위원회로 보기 위한 것으로, 이미 등록을 마친 조직위원회를 대회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안 제5조에 따른 조직위원회로 간주하는 규정임.

문 의 처
02)6788-5384

□ 추진 배경

- 국내외 **최소 40만명 이상**(최대 100만명)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톨릭교 행사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행사로서 다각적 협력 및 지원
- 미래 세대인 10·20대를 중심으로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참가하여 타문화 소통을 통해 글로벌 협력과 연대감 형성

□ 추진 경과

- **(개최도시 선정)** 2023 세계청년대회 폐막미사(포르투갈 리스본/’23.8.6.)에서 2027년 차기 개최지로 ‘대한민국 서울’ 발표
- **(추진체계)** 천주교 서울대교구 내 1단계 조직위원회* 출범(’23.12.)
 - * 조직위원장(정순택 대주교), 총괄 코디네이터(이경상 보좌주교), 사무국 등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발대식 개최**(’24.7.28./ 명동대성당), (재)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 설립**(’24.8월)
- **(지원법률)** 2027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안 발의**(김병기·김상훈, 성일종 의원 2건/’24.11.)
- **(기초연구)** 기초연구팀(서울대교구 사제 등 40여명) 운영, **KDI 기본계획*** 수립 추진(~’25.4./ 자체예산)

* △ 2027 세계청년대회 프로그램, 운영체계 등 계획 수립, △ 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민간 참여(후원 등) 확대 방안 마련, △ 직·간접 경제적 효과성 추정 등

□ 행사 개요

- **(대회명)**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 영문 WYD SEOUL 2027
- **(대회규모)** 국내외 최소 **40만명 이상** (최대 100만명)
- **(대회기간)** 2027. 7. 28. ~ 2027. 8. 8. (예정)
 - 본대회(5박 6일) : 교황 환영행사, 개막미사, 교리교육, 십자가의 길, 젊은이 축제, 밤샘기도, 폐막미사 등
 - 교구대회(4박 5일) : 각 지역교구에서 준비한 교육프로그램
- **(대회장소)** 본대회(서울) 및 14개* 지역 교구
 - * 14개 교구(인천, 의정부, 수원, 춘천, 원주, 대전, 청주, 대구, 안동, 부산, 마산, 전주, 광주, 제주)
- **(주최/주관)** 천주교 서울대교구 / (재)2027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 **(대회 프로그램(안))**

7/28	29	30	31	8/1	2	3	4	5	6	7	8
도착	교구대회				출발 이동		교리교육 성삼일			YF	폐막미사
							젊은이 축제(YF)				봉사자 만남
						개막미사	YF	환영행사	십자가의길	밤샘기도	

참고 2

국내 유사 입법례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117호)	제1조(목적) 이 법은 2023년에 개최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발전적으로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람회 관련시설"이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에 관한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박람회 여건조성시설 및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말한다. 2. "박람회 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정원 및 주제 전시관 나. 체험시설 및 체험시설 관련 편의시설 다. 박람회 운영·관리 시설 라. 전기·전자·통신·가스 시설 마. 그 밖에 박람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박람회 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박람회 운영 및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정비가 필요한 주요 도로 등 교통시설 나. 홍보안내 시설 다. 박람회 직접관련시설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라. 그 밖에 박람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①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관리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3. 박람회 참가국, 세계박람회기구 및 국제원에생산자협회와의 협력 4. 그 밖에 박람회의 원활한 준비, 운영과 사후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⑤ 조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⑥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대테러·안전 대책 등)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안전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테러·안전 대책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5.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사용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8.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9.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제11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률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제12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운영 및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휘장사업 2. 기념주화의 판매 3. 박람회 시설임대사업 및 기념사업 4. 박람회 및 박람회 관련 문화·예술 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5. 박람회 관련시설과 부지를 활용한 정원관광, 정원문화 및 정원치유사업 6. 박람회 관련시설과 부지를 활용한 건강·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 사업 7.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람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기념주화의 판매)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14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박람회 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조직위원회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잔여재산은 제25조에 따른 사업계획 내 사후활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 박람회의 준비·운영, 박람회장 관련 시설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행정적 협조 및 재정적인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제22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박람회와 관련된 시설 사후활용 및 수익사업 등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람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박람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지원 특별법 (제1983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2023년에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과 국민의 여가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잰버리 관련시설"이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이하 "세계잰버리"라 한다)에 관한 직접관련시설 및 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2. "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세계잰버리 운영·관리 시설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나. 야영장과 야영장 관련 편의시설 다. 체험장과 체험장 관련 편의시설 라. 전시관 마. 야영장 진입도로 바. 응급의료시설 사. 전기·전자·통신·가스 시설 아. 그 밖에 세계잼버리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세계잼버리 운영 및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보조 간선도로 등 교통시설 나. 직접관련시설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및 홍보안내시설 다.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 라. 그 밖에 세계잼버리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①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조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잼버리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관리 4. 세계잼버리 참가국 및 국내외 스카우트 기구와의 협력 5. 그 밖에 세계잼버리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며, 위원총회 및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집행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조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⑥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위원총회와 집행위원회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23조에 따라 승인한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 세계잼버리의 준비·운영,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 운동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테러·안전 대책 등)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과 종사자·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안전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테러·안전 대책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8.>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5.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사용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8.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제12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제13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1. 휘장사업 2. 기념주화의 판매 3. 시설임대사업 4. 그 밖에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기념주화의 판매)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15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세계잼버리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조직위원회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8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잔여재산은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 내 사후활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정부지원위원회) ①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법무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8. 보건복지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국토교통부장관 11. 해양수산부장관 12. 국무조정실장 13. 새만금개발청장 14.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5. 조직위원회 위원장(이하 “조직위원장”이라 한다) 16. 세계잼버리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1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고위 공무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제24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글로벌 리더에게 청소년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한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잼버리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세계잼버리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세계잼버리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세계잼버리 종합계획에 따라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청소년단체 활동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

□ 2013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WYD

- 2013년 제27회 세계청년대회 조직 및 개최와 관련된 세제 혜택 및 혜택 제정(제5566호 법령 2013년 12월 4일 / 리우데자네이루시 의회)
- 리오 **WYD** 특별위원회 설립법 (2011년 10월 5일 43,219호)

□ 2016 폴란드 크라쿠프 WYD

- 폴란드 공화국 ‘교황 프란치스코의 방문 및 **2016** 크라쿠프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특별 조치에 관한 법률’ (2016년 3월 18일 제정 법률)

□ 2023 포르투갈 리스본 WYD법

- 프로젝트 그룹을 설립하여 **2023년**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대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명시하며, 보바텔라 로도 철도 복합 물류 복합체의 영구 재배치 일정을 결정합니다.(2021년 4월 28일 총리 내각령 45/2021)

참고 4

천주교 현황

□ 일반현황

- 신 자 수 : 5,970,675명 ('23 한국 천주교회 통계 기준)
- 본당 / 공소수 : 1,789개 / 708개
- 교역자수 : 추기경 2, 대주교 6, 주교 34, 신부 5,679, 수사 1,602, 수녀 10,071
- 우리나라 천주교 전래
 -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전래
 - 초창기 신유박해(1801), 병인박해(1866)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음.
 - 한미수호통상조약(1882), 한불수호통상조약(1886)으로 선교의 자유

□ 교구별 현황

('23.12.31.현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 구 구 분		신 자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 부	본 당	공 소
1	서울	1,530,303	1	1	3	963	233	-
2	춘천	92,910	-	-	2	117	62	37
3	대전	342,506	1	-	2	396	145	75
4	인천	527,167	-	-	1	356	134	28
5	수원	953,150	-	-	4	573	222	24
6	원주	80,894	-	-	2	123	54	36
7	의정부	327,049	-	-	2	243	87	5
8	대구	514,520	-	1	1	528	164	77
9	부산	460,065	-	-	3	368	126	13
10	청주	172,143	-	-	2	197	82	46
11	마산	182,652	-	-	3	178	75	49
12	안동	52,459	-	-	2	93	40	61
13	광주	366,882	-	4	-	296	142	79
14	전주	202,359	-	-	2	226	96	70
15	제주	84,054	-	-	3	57	31	6
16	군종	81,562	-	-	2	1(102)	96	102
17	수도회	-	-	-	-	964	-	-
합 계		5,970,675	2	6	34	5,679	1,789	708

- * 군종교구 괄호안 숫자는 타교구에서 파견된 신부 수, 교구신부와 중복되므로 합계에 미합산
- * 총인구(52,673,955명) 대비 총 신자(5,970,675명) 비율 : 11.3%(천주교 자체 추계)
- * 신부 1인 대비 평균 신자 수: 1,051명